

심 사 보 고 서

- 구미시죽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
-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익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 회 산 업 위 원 회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산업위원장 김종령의원 입니다.

구미시의회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 회부된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과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오수
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은 가축시육으로 발생
되는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날로 심화되어가는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보다 깨끗한 환경과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축산
농가의 축산폐수를 공동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회 임시회에서 심사하면서 축산농가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시킨 후 지난 9월 19일 선산출장소 회의실에서 축산 농가와 당 사회산업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격의없는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5조제1항을 「별지1」과 같이 수정하여 신고대상시설미만 축산농가에 대한 설치를 권장토록 하고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명칭을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로 개정하는 사항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예 따라 달라지는 자구를 수정하고,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 그리고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시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적용 품목과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원활한 폐기물처리가 되도록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자구와 행정서식을 수정하고, 환경부에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의 신설 및 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며,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부분을 과태료 부과대상에 따라 기준을 설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과 구미시일반폐기물의배출 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일반폐기물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현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